

2026년 제1회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재재공고

홍성교도소에서는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공무원, 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6년 6월 16일

홍성교도소장

1 임용예정인원 (1개 직위, 총 1명)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근무지)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사)	1명	채용일 ~ 2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충청남도 서산시)

※ 임기제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임용예정직무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사)	수용자 의료 및 교정행정에 관한 업무

※ 임용예정직위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3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등

4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 응시 결격사유 및 응시 자격정지 등 관련 세부 규정은 "붙임1" 참조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연령 : 18세 이상인 자(2008.12.31. 이전 출생자)
 -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60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소집해제) 예정자 포함

나. 응시자격요건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임용예정직급	자격 요건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사)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 응시자격요건 관련 자세한 사항은 '직무기술서'(붙임2) 참조

[응시자격요건 고려사항]

○ 기본사항

-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응시자격요건(경력)에 기재된 사항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면허증(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불가)

○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기간은 통상근무(상근)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근무의 경우 기준(주당 40시간)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격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평가요소) ①소통·공감(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헌신·열정(국가에 대한 헌신과 직무에 대한 열정적인 태도), ③창의·혁신(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윤리·책임(공무원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책임성),

⑤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방식) 개별면접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도달할 때까지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시험 일정

구분	시험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정	'26.06.16.(화) ~ 06.25.(목)	'26.06.22.(월) ~ 06.25.(목)	'26.07.09.(목)	'26.07.21.(화)	'26.08.06.(목)

- 본 시험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상황,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별도로 개별통보
- 서류전형 합격 및 최종합격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일시 및 시간 : **2026. 06. 22.(월) ~ 06. 25.(목)**,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방문(대리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주소 : (우)32244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 홍성교도소 총무과
(겉표지 '**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문의전화 : 041-630-8614
- 응시원서는 [붙임3] 제출서류 안내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교부할 예정

나. 제출서류 ☞ 각 제출서류별 작성 내용 등은 [붙임3] 참조

구분	서류	비고
공통사항 (필수 제출)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 별지 제1호
	응시원서(수입인지 부착) 1부	○ 별지 제2호
	이력서 1부	○ 별지 제3호
	자기소개서 1부	○ 별지 제4호
	직무수행계획서 1부	○ 별지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별지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 별지 제7호
	결격사유 등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 별지 제9호
	주민등록초본 1부	
	의사면허증 사본 1부	
	자격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 1부	○ 별지 제8호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원 1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등) 사본 1부		
개별사항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다.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임용예정직무, 응시자격요건 등을 정확하게 확인 후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개별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류전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로 보완하여야 합니다.

* ① 관련분야 근무경력 증빙자료(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 ② 폐업사실증명서, ③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④ 소득금액증명서 → ①, ②, ③, ④ 모두 제출해야 함

참고
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hometax)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사실증명신청(1번) → 사실증명(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 민원증명 → 민원증명신청-소득금액증명(2번) → 근로자소득용 발급(발급기한 설정) ⇒ 폐업회사 사업자번호 확인 →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 제출된 서류에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미비 등으로 인한 합격 취소 등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 정지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법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 사유가 되므로 응시원서 작성방법, 시험일정과 안내 사항, 합격여부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자가 접수기간 중 또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내에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한 경우 해당 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08. 10. ~ '26. 08. 14.

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임용 예정일 : 2026년 9월 예정,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년(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에 따라 임용직급의 보수 및 수당 지급
 - 채용직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6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사)	-	70,490

- 연봉한계액 범위 내에서 연봉액을 정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연봉상기 연봉액 외에도 정액 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가족수당(대상자만 지급) 등 일정액의 연봉 외 지급
- (신규임용자 연봉책정)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각 부처에서 민간에 준하는 수준의 연봉책정도 가능하도록 연봉특례 제도 신설에 따라 2024. 1. 1. 이후 신규임용되어 최초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신규임용일을 기준으로 별도 상한 없이 연봉책정 가능
 - ※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 임용시점에서 보수 규정 변경 시 연봉 상·하한액이 변경될 수 있음

9 안내 및 참고사항

-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3에 따라 임기제는 원칙적으로 전보가 허용되지 아니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홍성교도소 총무과(041-630-8614)로 문의 바랍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 ① 제33조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제33조제6호의4에 관한 개정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5857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17일 이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응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하 "최종시험예정일"이라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비다수인대상 채용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제5조제4항에 따른 체력을 실기의 방법으로 검정하는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이하 생략)

붙임 2

임용예정직위 직무기술서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의료(의사)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사)	1명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의료계)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자에 대한 건강진단, 질병치료 등 의료업무 ○ 감염병 예방 및 감염관리 ○ 교정시설의 위생업무 및 그 밖의 교정행정에 관한 사항 등
-------	---

필요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역량) 공직윤리,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기술적 전문지식, 전략적 사고력, 대인관계
-------	---

필요 지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학이론 및 의료·보건위생 지식, 보건의료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지식 ○ 국내외 건강보험제도 관련 지식 ○ 수용자 특성 및 임상경험에 기초한 임상적 지식 등
-------	--

응시자격요건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등 환자진료

※ "응시자격요건"은 최종시험예정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면허증(자격증)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 예정자 응시불가)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필수)	○ 별지 제1호 작성, 자필서명 필수
2. 응시원서 1부(필수)	○ 별지 제2호 작성, 자필서명 필수 ※ 응시수수료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 가까운 우체국,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www.e-revenuestamp.or.kr) 등을 통해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필수)	○ 별지 제3호 작성, 자필서명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필수)	○ 별지 제4호(A4 2매 이내) 작성, 자필서명 필수
5.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별지 제5호(A4 4매~6매 이내) 작성, 자필서명 필수 ○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 정책, 목표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별지 제6호 작성, 자필서명 필수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별지 제7호 작성, 자필서명 필수
8. 결격사유 등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필수)	○ 별지 제9호 작성, 자필서명 필수
9. 주민등록초본 1부(필수)	○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포함(병역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군복무확인서 추가 제출) ○ 개명한 경우 개명사항 포함
10. 의사면허증 사본 1부(필수)	○ 면접시 원본 지참
11. 자격요건 관련 경력 증빙서류 1부(필수)	○ 표 하단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참고 ○ 필요시 별지 제8호(경력(재직)증명서) 사용·제출
12. 4대보험 자격득실 중 1종(필수)	○ 표 하단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참고
13. 소득금액 증명원 1부(필수)	○ 표 하단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참고
14.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필수)	○ 전형위원 제척·기피, 응시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 해외 학위는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15. 전문의 자격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체크항목, 작성일자, 자필서명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구분	유의사항								
<p>모든 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서 제출 ▶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증빙자료의 경우 발급일을 제한하지 않음 								
<p>경력증명 (경력증명서 +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 증명원)</p> <p>※소득금액증명원→ 제출하는 경력증명 의 전체기간을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증명을 위해서 ①경력증명서, ②4대보험 이력확인서, ③소득금액 증명서 세가지 모두 제출(일치)하는 경우에 경력 인정 ①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과 함께 담당업무, 근무형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간략)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재직)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경력은 불인정 ※ 근무형태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기재되어야 하며, 시간제 근무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이 모두 인정되었더라도 검증단계에서 시간제 경력이 확인될 경우 최종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당 40시간 근무 : 경력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 :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예) 4년간 주당 20시간 근무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연락처 포함(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관인 날인 필수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 주소 기재) ※ 경력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반드시 하나만 기재할 것 ※ 기관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 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 소득금액증명서 추가 제출 ② 4대 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자격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table border="1" data-bbox="454 1377 1364 1579"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고용보험</td> <td>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td> </tr> <tr> <td>국민연금</td> <td>가입자 가입증명서</td> </tr> <tr> <td>건강보험</td> <td>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td> </tr> <tr> <td>산재보험</td> <td>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력업체(기관)의 합병(통합) 등으로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와 소득금액증명상의 업체(기관)명이 불일치(불분명)한 경우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 사업장명칭변경내역이 나오는 국민연금 함께 제출 권장) ③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www.hometax.go.kr)이나 세무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 ※ 소득금액증명에 반영되지 않는 기간은 통장사본 등 입증이 가능한 자료 제출 예) 2025년 소득금액증명이 없는 경우 또는 기간별 소득금액증명이 없는 경우 입금기관이 표시된 통장사본 또는 급여내역 증명자료 제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해당회사, 기간에 따라 별도 출력)								
<p>외국어 작성 증명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별지 1】

제출서류 목록표

성명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의료(의사)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 제출서류(총괄표)

번호	제출서류명 (1~8 서류상 작성일자, 자필서명, 체크항목 등 누락 주의)	필수여부	제출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필수	<input type="checkbox"/>
2	응시원서(수입인지 부착)	필수	<input type="checkbox"/>
3	이력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4	자기소개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5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8	결격사유 등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필수	<input type="checkbox"/>
9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개명시 개명사항 기재)	필수	<input type="checkbox"/>
10	의사면허증 사본	필수	<input type="checkbox"/>
11	경력증빙서류(경력증명서 등) 사본	필수	<input type="checkbox"/>
12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필수	<input type="checkbox"/>
13	소득금액증명원	필수	<input type="checkbox"/>
14	대학교이상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사본	필수	<input type="checkbox"/>
15	전문의자격증 사본	해당자	<input type="checkbox"/>

※ 응시자는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유무**란에 반드시 "√" 표시

※ 상기 목록 순으로 정리 후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스테플러 사용 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별지 2】

응시원서

본인은 2026년도 제1회 홍성교도소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의사) 경력경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홍성교도소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사)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주 소	(우)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10,000원) [전자수입인지(A4크기)의 경우 응시원서 뒤에 첨부	
전자우편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 (우)

응시표 (홍성교도소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의사)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과학기술서기관(의사) (일반임기제 4급)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홍성교도소장 (우)			

주 의 사 항

-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교부할 예정입니다.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실물)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 『응시원서』 는 아래의 《작성요령》 에 따라 작성한다.

◆ 작성요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과학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4급)
- ②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 ③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 ④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예 에 ‘V’ 체크 한 후 취득한 외국국적명을 ()에 기재, 아닌 경우 아니오 에 ‘V’ 체크
- ⑤ 정부수입인지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별지 3】

이 력 서

1.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의료 (의사)	응시 직급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사)	성명	
----------	----------	----------	------------	----------	------------------------	----	--

2. 응시자격

경력 (의사 면허 증 취득 후 직무 관련 분야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병원 (○○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05.01.~16.12.31.(질병휴 직)	00과장 (4급)	내과진료	시간제근무 (주당20시간)
	○○병원 (○○팀)	18.1.1 ~ 24.12.31.	00팀장	가정의학과진료	통상근무
자 격 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의사면허증	'13.10.01.			
	전문의자격증	'15.12.01.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사항을 작성

- 근무일자, 퇴직일자는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작성, 담당업무 상세기재
- 근무기관, 근무기간(시작일, 종료일)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뒷 면)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경력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 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통상근무(상근)' 또는 '시간제근무'로 표시하되, 시간제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근무의 경우 주당 40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 예시) 통상근무 시간이 주당 40시간인 회사에서 4년간 주당 20시간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 2년 인정

자격증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최종면접시험일 기준 유효한 면허증(자격증)에 한함

【별지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사)
-----	--	-----------	------------------------

◎ 자기소개서

-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마지막 하단에 작성일자, 자필서명 기재**

작성일자 : 2026년 월 일 작성자(성명) : (서명)

【별지 5】

직무수행 계획서

성명		응시직급 및 분야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사)
----	--	-----------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마지막 하단 작성일자, 자필서명 기재

○ 작성요령

-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A4용지 4매~6매 이내(요약서 불요)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작성일자 : 2026년 월 일 작성자(성명) : (서명)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병역사항,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 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3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홍성교도소장 귀하

【별지 9】

결격사유 등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명	생년월일	임용예정기관	응시분야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과학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의사)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국가공무원법」 부칙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응시 결격사유 등)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홍성교도소장 귀하

【별지 1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교도소장 귀하

공지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